

합리적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법 및 시사점

임 예 진 | 퇴직연금연구센터 책임연구원(yjlim@kcomwel.or.kr)

양 현 경 | 퇴직연금연구센터 전임연구원(hkyang@kcomwel.or.kr)

요약

- ▶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수수료를 운용성과와 서비스 수준에 연동되도록 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가입자는 사업자에 대한 운용성과와 비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으로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또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적립금 운용에서 원리금보장 상품의 편중으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함에 따라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장기 관점의 구조적 해법이 필요함.
- ▶ 국내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와는 연동되지 않음.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기준이 서비스의 수준이나 운용성과보다는 사업장과의 기존 거래관계가 주요하게 작용되고,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수수료 체계를 설계할 유인이 적음.
 - 제도유형별로 총비용부담률을 살펴보면 중소·영세사업장의 도입 비중이 높은 DC·기업형IRP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의 제도 운영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비용부담률은 높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퇴직연금시장의 비효율성으로 가입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OECD가 제시한 접근법 중 구조적 해법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옥션제도를 활용하거나 정부 기관을 설립하여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음.
 - 칠레와 뉴질랜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옥션시스템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가장 낮은 수수료와 같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신규 가입자 확보 또는 연속 계약 등 독점적인 우위를 제공함.
 - 영국 NEST와 스웨덴 PPM은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고 사용자와 가입자 비용을 절감시킴.
 -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직접적인 가격규제 접근 방식보다는 사업자 간 자율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으로 보임.
- ▶ 퇴직연금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2022년 4월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전담하면서 적은 비용(수수료)과 높은 운용성과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지배력을 키워나간다면,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해 가입자 이익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퇴직연금 및 자본시장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음.

1. 서론

- ▶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
 - 고용노동부는 현재 적립금액 기반으로 부과되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를 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연동되도록 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 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임.
- ▶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현재의 퇴직연금시장 환경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체감하는 수수료의 연금자산에 대한 민감도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음.
 -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난 5년간 연환산수익률은 1.85%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기준 총비용부담률은 0.42%에 달해 가입자의 비용부담 체감도가 높게 나타남.¹⁾
- ▶ 퇴직연금시장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지식 또는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장의 가격(관리비용 및 수익률이 반영)에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짐.
 - 이와 같은 퇴직연금시장의 수요자(사업장 및 가입자)와 공급자(퇴직연금사업자)적 특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상당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지는 구조를 생성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평균적 비용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됨.
 - 따라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존재.
- ▶ 본고에서는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외 국가들의 정책적 접근법을 참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퇴직연금시장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함.
 - 퇴직연금상품의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방법과 그에 따른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함.
 - 특히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운용성과와 연동,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 세분화, 수수료 공시체계 개선 등 여러 개선방안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퇴직연금사업자가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저금리와 저조한 운용수익으로 가입자의 연금자산에 대한 수수료 민감도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

1) 금융감독원 (2021).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2. 국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및 현황

국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적립금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와는 연동되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단순히 적립 규모 확대가 중요

▶ 국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대별하여 적립자산을 부과기준으로 하여 특정요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²⁾

* 단일요율 또는 적립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차등요율 방식이 존재하며, 이를 혼용하기도 함

• 이러한 수수료 체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와는 관계 없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단순히 적립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

▶ 현재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또는 운용성과보다는 사업장과의 기존 거래관계가 주요한 선정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수수료가 퇴직연금시장 경쟁에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가입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유인이 적음.

▶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0.45%에서 2020년 0.42%로 0.03%p 감소하였으며, 제도유형별로는 DC·기업형IRP의 총비용 부담률이 0.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총비용부담률 = 연간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총비용 등)/연도말 적립금 총액

•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은 주로 DC·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DC·기업형IRP가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영세사업장의 제도 운영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됨

〈표 1〉 연도별 제도유형별 총비용부담률 현황

연도	전체	DB	DC/기업형IRP	IRP
2020	0.42%	0.36%	0.55%	0.39%
2019	0.45%	0.40%	0.57%	0.42%
2018	0.47%	0.41%	0.60%	0.46%

※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4)

▶ 2021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 평가」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 업권·상품별로 수익률 성과와 총비용부담률이 상이하게 나타남.

• 수익률 성과를 살펴보면 원리금보장 상품은 보험사가 2.31%로 가장 높으며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증권사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김병덕 (2019).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로
적립금 운용성과와
총비용부담률을 살펴보면
수익률은 낮으나
총비용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존재

-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 성과에서 보험업권의 성과가 좋은 이유는 보험사가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이율보증형 상품(GIC)이 은행의 예적금이나 증권사의 ELB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임.
- 총비용부담률 또한 수익률 성과와 마찬가지로 원리금보장 상품은 보험사가 0.53%로 가장 높고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증권사가 0.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경우 증권사는 일임형, ELS 등 액티브 상품 및 관리형 상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큼.
- 그러나 수익률 대비 총비용부담률의 비율을 살펴보면, 은행은 원리금보장 상품의 수익률이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비용부담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리금비보장 상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은 보험사에 비하여 수익률이 더 낮게 나타났으나 총비용부담률은 0.76%로 동일함.
- 이와 같이 운용성과와 연동되지 않고 적립금 규모에 기초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 현행 수수료 체계는 전반적으로 운용수익이 저조한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

〈표 2〉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구분	수익률 성과		총비용부담률		총비용부담률/수익률	
	원리금 보장	원리금 비보장	원리금 보장	원리금 비보장	원리금보장	원리금 비보장
은행	1.87%	4.08%	0.50%	0.76%	0.27	0.19
증권	2.24%	4.30%	0.29%	0.87%	0.13	0.20
보험	2.31%	4.27%	0.53%	0.76%	0.23	0.18

※ 자료 : 2021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자료

3. 합리적 수수료 체계 조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법

- ▶ OECD에서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fee structure)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체계에 따라 정책적 접근법도 상이하게 나타남.³⁾
 - 수수료는 기여금(contributions), 급여(salaries), 연금자산(assets), 운용성과(performance)에 기반 하거나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자산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음.
- ▶ OECD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의 비효율성으로 가입자에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가격규제, 구조적 해법의 3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구조적 해법에 주목할 필요성 존재⁴⁾

3) OECD (2019). Pension at a glance 2019

4) OECD (2014). OECD Review of Pensions systems : IRELAND

- **정보공개(disclosed-based)** : 가입자들이 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비교를 포함함.
- **가격규제(price regulations)** : 수수료의 단일부과구조(부담금 또는 자산관리수수료 등 하나의 요인에 대하여 부과)를 허용하거나 수수료에 상한(cap)을 두는 것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자산에 대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12개국에서 연금자산 수수료에 대한 상한을 적용하고 있음.

〈표 3〉 OECD 주요 국가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구분	급여	기여금	연금자산	운용수익률·성과	기타 수수료
대한민국	×	×	No cap	×	×
호주 (MySuper제외)	No cap	No cap	No cap	No cap	No cap
칠레	No cap	×	×	×	×
덴마크	No cap	No cap	No cap	No cap	No cap
아일랜드	No cap	No cap	No cap	No cap	No cap
스웨덴 (Premium Pension)	×	×	Capped	×	×
영국	×	×	Capped	×	×
미국	No cap	No cap	No cap	No cap	No cap

* 참고 : “×”는 해당 분류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자료 : OECD (2019). Pension at a glance 2019

퇴직연금시장의 비효율성으로 가입자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옥션방식을 도입하거나 정부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구조적 접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구조적 해법(structural solutions)** : 다양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금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낮은 수수료)을 제공하기 위한 협상자 역할을 담당할 중앙기관의 설립하는 것을 의미
 -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퇴직연금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을 피할 수 있어 낮은 수수료 체계를 가능하게 함. 그러나 중앙집중화로 인하여 효율성과 독립성 관점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부가 연금서비스를 제공할 중앙기관을 설립하여 운용함으로써 가입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NEST와 스웨덴의 PPM이 존재함.
 - 칠레와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옥션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한 가입자 비용절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서 옥션방식 적용을 통한 수수료 절감

- ▶ 칠레는 2008년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서 옥션시스템을 적용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후 2년간 신규 가입자 모두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
 - 2010년 첫 번째 옥션에서 칠레의 Modelo 사는 시장의 평균 수수료보다 30%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여 입찰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두 번째 옥션에서 Modelo는 첫 번째보다 20%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여 두 번째 사업자로 연이어 선정됨.
- ▶ 뉴질랜드의 KiwiSaver 제도에서도 정부가 지정하는 디폴트펀드의 사업자 선정에서 이러한 옥션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입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경쟁을 위하여, 가입자가 약 30개 정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사업자 교체가 가능하도록 함.
 - 그러나 만약 가입자가 스스로 연금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6개의 디폴트펀드 사업자 중 하나에 랜덤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함.
 - 이 디폴트펀드 사업자는 7년을 주기로 지정되며, 정부에서는(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6개의 디폴트펀드 사업자를 선정 시 펀드의 규모와 스케일, 그리고 최종 적립금잔액에 대한 수수료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함.
 - 즉, 정부는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낮은 수수료)을 제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6개사를 선정하여 이들이 7년간 가입자와 독점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사업 간 자율경쟁을 통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나. 정부의 퇴직연금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한 수수료 절감

- ▶ 정부가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비용절감을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NEST임.
 - 영국 노동연금부(DWP)는 산하 공기업으로 NEST를 설립하고 퇴직연금 수탁자(trustee)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 스웨덴 정부는 1999년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연금제도인 Premium Pension을 도입하면서, 이를 전담할 기관인 PPM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여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사용자와 가입자의 비용을 절감함.

스웨덴의 Premium Pensions Myndigheten 사례

- ▶ 스웨덴 정부는 1999년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기존의 DB형 연금제도에서 DB와 DC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의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도입하였음(2000년 시행)

기존 시스템		새로운 연금 시스템
Traditional DB plan	연금개혁을 통해 하이브리드형 (DB+DC) 연금으로 변화 ➔	Notional DC plan (기여율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y-as-you-go basis • bookkeeping 기준 • 사전에 정의된 공식에 따라 급여 산출(그러나 생애소득, 임금상승률, 기대여명 등에 따라 급여 변동)
		Premium Pension (기여율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형 • mandatory individual accounts • 적립된 기여금과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 산출
총 기여율 18.5%(한도 \$40,000)		

- ▶ 이 연금개혁에서는 의무개인연금(mandatory individual account)인 Premium Pension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이를 전담할 새로운 정부기관 PPM을 설립함
 - (설립목적)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으로 요구되는 광범위한 업무의 수행, 행정 및 관리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역할) 개인의 Premium Pension 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clearing house와 record keeper 포함)를 수행함
- ▶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제도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National Tax Authority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음
- ▶ 퇴직연금사업자는 오직 투자관리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고 개별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판매 및 유통채널 구축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PPM이 사업자와 가입자의 중간에서 이와 관련한 역할을 대행)
 - Premium Pension 가입자는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뮤추얼펀드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정부 설립·관리 기금(디폴트펀드인 AP7 fund)에 투자할 수 있음

PPM과 수수료 체계

- ▶ 스웨덴 Premium Pension의 수수료 정책은 낮은 수수료 부과체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1) 관리비용(administrative cost)절감 (2) 수수료 경쟁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둠
- ▶ Premium Pension에서는 계좌잔액에 대하여 연 0.3%의 고정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는 각각의 펀드로부터 수취되어 PPM으로 보내짐

PPM의 수수료 리베이트(fee rebates)

- ▶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 구조와 공시요건에 대하여 반드시 PPM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반드시 수수료의 일부를 PPM에 관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해야 하는데, 이는 PPM이 행정 및 관리 기능의 대부분을 수행하기 때문임
- ▶ PPM은 리베이트 된 수수료를 다시 가입자의 계좌로 전달하며, 개별 가입자가 가져가게 되는 리베이트는 individual share와 general share 두 부분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individual share: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따라 0.4%를 초과하는 펀드에 대하여 지급
 - general share: individual share가 지급된 이후 남은 리베이트 분은 개인의 계좌규모에 비례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배분되며, 수수료가 아닌 계좌규모에 따라 지급되므로 가입자는 수수료가 낮은 펀드를 선택하게 될 유인이 증가함

4. 시사점

- ▶ 최근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증권업계에서 수수료 면제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 업권 간 경쟁이 본격화 됨.
 - 증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2020년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증권사 점유율은 전년도 19.8%에서 20.2%로 0.4%p 증가함.
 - 이처럼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수수료를 시장경쟁 요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퇴직연금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장구조에서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 정부가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체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접근법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으로 보임.
 - 많은 국가들에서 수수료에 상한(capped)을 두는 직접적인 가격규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사업자 간 자율경쟁을 통한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옥션방식을 활용하거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전담기관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2022년 4월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향후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는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 운영을 전담할 예정임.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DC형과 기업형·개인형IRP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은 운용관리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강점을 내세워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
 - 향후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공단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기관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키워나간다면,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퇴직연금 및 자본시장을 성숙하게 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기금 초기 운영단계에서 OCIO 사업자 선정에서 칠레와 뉴질랜드와 같이 옥션방식을 활용하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존재.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경쟁이 가능한
퇴직연금시장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중소퇴직기금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